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0
----------	-----

발의연월일 : 2025. 5. 30.

발 의 자 : 박은경, 한근수, 이정애,
김동훈, 원주영

1. 제안 이유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전통혼례 지원사항 및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사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 지원 등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 가. 「지방자치법」
- 나. 「문화기본법」
- 다. 「지역문화진흥법」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 예복을 착용하고 전통적인 절차와 형식에 따라 진행하는 혼인 예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혼례 및 체험에 필요한 물품 등 예식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전통혼례 및 체험을 위한 공간조성 비용
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 지급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

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통혼례를 치르거나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
2.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기념일 등 기념식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
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우리시 정약용문화제 회혼례 진행 사례 등을 검토해보았을 때, 전통혼례에 필요한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비용추계
 - (2023년 정약용문화제 중) 회혼례 총 2회 470만원
 - (2024년 정약용문화제 중) 회혼례 총 1회 320만원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 11. (생략)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